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년 4월 8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○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함께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원의 권리를 증진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- 나.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 확산을 위한 표창에 관한 규정(안 제9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2년 4월 13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**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6, FAX : 820-1474, E-mail : kyong69@dongjak.go.kr)**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정함” 을 “규정함” 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 을 “뜻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2조제4호” 를 “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4호” 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필요한 경우” 를 “3년마다” 로, “실시할 수 있다” 를 “실시하여야 한다” 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복지 증진을” 을 “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” 를 “제1항의” 로 한다.

4.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

제9조를 제10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표창) 구청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,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1.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질 향상
2.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
3.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<u>정합</u> 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규정함</u> ----- ----- 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</u> 는 다음과 같다. 1. “장기요양기관”이란 「 <u>노인장기요양보험법</u> 」(이하 “ <u>법</u> ”이라 한다) <u>제2조제4호</u> 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. 1. ----- 「 <u>노인장기요양보험법</u> 」 <u>제2조제4호</u> ----- -----.
제5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<u>필요한 경우</u>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, 근무환경,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② (생략)	제5조(실태조사) ① ----- ----- <u>3년</u> <u>마다</u> ----- ----- ----- <u>실시하여야 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처우 개선 사업 등)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조(처우 개선 사업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</u>

4.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9조 (생 략)

5. ----- 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-----

② ----- 제1항의 -----

-----.

제9조(표창) 구청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,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1.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질 향상
2. 장기요양요원의 치우 개선 및 지위 향상
3.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

제10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